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①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26.10.1.)

② "국민의 억울함, 정성들여 듣고 끝까지 해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개최 ('26.10.2.)

②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현장에 맞는 지원으로 이어간다 ('26.10.13.)

④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바꿔달라고?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처분, 변경할 수 없어 ('26.10.27.)

⑤ 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26.10.29.)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10.1~10.31) 운영
- 최근 3년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25년 환경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약 5배, 환수처분 건수는 약 11배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등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환경분야의 부정수급 환수액과 환수처분 건수가 2023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사업의 환수액이 2023년 대비 2025년에 약 6배 증가**하는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2023년 대비 2025년 환수액 약 5배 증가(5.6억→29.4억)
2023년 대비 2025년 환수처분 건수 약 11배 증가(129건→1,417건)

** 2023년 환수액 대비 2025년 환수액 27.3억 원 증가(5.2억→32.5억)

□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하여 구매지원금을 부정수급
-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계획했던 충전시설의 용량을 임의로 축소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 부정수급
- ○ 친환경 설비 구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환경정책자금을 과도하게 대출받고, 대출금 일부를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비롯하여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한 결과 최근 3년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정부지원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억울함, 정성들여 듣고 끝까지 해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개최

- 경청·조정을 통한 특이·집단민원 해소, 원스톱 민원처리 등 우수사례 발표
- 민원 해결 유공자 6인에 대통령 표창 친수 및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 가져

□ 정부는 오늘(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이하 사례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례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및 원스톱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하여,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를 확산하며, 그간 민원 해결에 힘쓴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례보고회는 KTV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누구나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❶부 : 유공자 포상 】

□ 1부에서 대통령은 민원 해결 및 제도 혁신에 유공을 세운 6명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친수한다. 표창을 친수하는 유공자들은 집단·특이민원 해결과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정성껏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찾은 공무원들로, 우수사례 발표자인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우 사무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송형근 주무관과 경상북도 구미시 윤선목 주무관과 더불어 관세청 신영호 주무관, 경기도 화성특례시 김정환 주무관, 경상남도 창녕군 정혜은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 이외 민원 해결 유공 대통령 표창 수여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영 사무관, 박길남 주무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미경 주무관,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박병준 주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신성심 주무관, (시민상담관) 한두희 변호사

【❷부 우수 민원 해결사례 발표 】

□ 그간 국민주권정부는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방안 등 민원 혁신을 위한 나침반이 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적극 이행해왔다. 이에 따라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창구 구성부터 현장·국민 중심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까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5개 기관에서 민원 해결사례를 발표한다.

발표사례는 정부의 민원 해결 철학인 4개의 키워드로 각각 구성된다. [국민의 억울함 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형근 주무관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신청인과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드림으로써 민원을 중단하게 한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최해일 사무관이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던 집단민원의 실타래를 풀어 시공·운행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마련해 복선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뒷받침한 사례, [원스톱 민원처리] ▲ 경상북도 구미시 윤선목 주무관이 원스톱 민원처리 전담팀을 현장에서 적극 운영해, 여러 부서가 얽혀 지연되는 복합민원을 안 되는 이유 대신 방법을 찾는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례, [기관 자체 해결력 강화] ▲ 경기도 화성특례시 유운호 자치행정국장이 특이·반복·집단민원 전담 체계를 구축하여 부서 간 협업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기관 자체 해결력을 강화한 사례, [‘보물창고’인 민원에서 찾은 행정혁신] ▲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우 사무관이 민원 속에 담긴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보물창고로 활용해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하여 각 기관에 우수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❸부 대통령과 참석자의 대화】

□ 이어서 대통령과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 민원 담당 공무원들 간에

민원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보람 등에 대한 각각의 경험과 발전방안, 다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참석자들은 사례보고회를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모두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관계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힘을 모아 더 나은 행정의 답을 찾겠다는 마음을 되새기며 마무리된다.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민원은 더 이상 처리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여는 열쇠”라며 “국민이 여러 부서를 오가지 않고 한 번에 빠르게 해결하는 행정을 현장에 굳게 뿌리내리도록 그간의 성과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현장으로 확산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경청·조정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지만 이를 통해 쌓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우리나라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갈등조정담당관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민원 담당자들이 힘을 내어 국민 목소리를 정성껏 들을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현장에 맞는 지원으로 이어간다

-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과 현장 소통…현장의견 담아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개선 및 기업지원방안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의 실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내부통제 시스템 및 관리 활동

□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과 오는 15일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렴윤리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온 기업들의 운영 경험을 살펴보며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컨설팅 등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대화제약, 한화오션, 노루홀딩스 등 3개 기업은 청렴윤리경영 유공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경영진의 실천 의지와 부패위험 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대화제약은 오늘(13일) 간담회를 실시하며 한화오션과 노루홀딩스는 오는 15일 간담회 실시

대화제약은 경영진 주도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운영했다.

한화오션은 직급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 윤리상담 전용창구 운영으로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왔으며, 노루홀딩스는 그룹 공통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개선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쌓아온 청렴윤리경영 경험은 제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이 실제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바꿔달라고?”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처분, 변경할 수 없어

- 중앙행심위, 요양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적법·정당한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

□ 요양기관(병·의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재정 부담 과다 등의 이유라 하더라도 처분이 적법·정당한 이상 이미 부과받은 과징금을 사후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매출 감소로 과징금을 부담하기 어렵고, 노후 병원 건물의 방수공사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며 ㄱ 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해당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 ㄱ의료재단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총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76일에 해당한다며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그러자 ㄱ의료재단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고, 12개월의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ㄱ의료재단에 업무정지 76일에 갈음해 부당청구액의 5배에 해당하는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ㄱ의료재단은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처분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 점, ▲ㄱ의료재단 역시 처음에는 병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신청했던 점, ▲ 병원 공사는 처분과 무관하게 진행됐어야 하는 점, ▲행정청도 일단 처분이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이상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며, “처분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과징금 처분의 취지와 법적 효과를 존중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토대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

-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공익신고자도 공소청에 책임감면 협조 요청하기로
- 공익신고와 관련된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에도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 현행 책임감면 근거조항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공익신고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어도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

다.

□ 또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

-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공익신고자도 공소청에 책임감면 협조 요청하기로
- 공익신고와 관련된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에도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 현행 책임감면 근거조항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공익신고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어도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감면의 필요

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또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